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93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전용기・박지혜・서영석

박지원 · 고민정 · 정일영

이수진 · 조계원 · 박용갑

이재강 • 박희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참사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 비행자료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음. 항공기의 엔진이 모두 꺼지더라도보조동력장치를 켜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되는데, 해당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초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모두 보조동력장치를 처음부터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항공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만약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 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보조동력장치의 의무 설치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가 불가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2조의2(보조동력장치의 의무
	설치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보조동력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가 불가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